

## 물리학과 대학원 내부 규정

- 2017년 9월 26일: 학위청구 자격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1.1절, 1.2절).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3.1절, 3.5절, 3.6절)
- 2013년 6월 17일, 24일: 학위청구 자격 심사에 관한 규정 추가(1.3절). <중간 연구발표회>를 추가(2.2절).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공개발표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3.3절).
- 2013년 2월 14일: 대학본부의 방침(고등교육법)에 따라 자격시험 면제에 대한 항을 삭제함. 같은 이유로 전공과목 수강으로 대체할 수 없는 박사과정 전공과목 자격시험을 폐지함. 대학원 학칙에 따라 사정기준 삭제함.
- 2013년 2월 12일: 학위청구자격에 대한 규정과 종합시험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고, 규정의 일부를 변경함.
- 2004년 1월 26일: 주진수(대학원관리위원장), 박성근(위원), 양승렬(위원)의 서명으로 종합시험에 대한 규정을 발효함.

### 제 1장 학위청구의 자격

1. 박사학위 청구자격: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2017년 개정)
  - a) Physical Review 자매지 또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동급이상 SCI 학술지에 1편 또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SCI 학술지에 2편의 논문을 주저자<sup>1</sup>로 출간<sup>2</sup>.
  - b) 국제학회에서 주저자로 구두발표 1회 혹은 포스터 발표 2회 이상.
  - c) 이 개정안은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2017학년도 2학기 학위 수여자부터 적용한다.
2. 석사학위 청구자격: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두 조건 중 1 개를 만족하여야 한다. (2017년 개정)
  - a) SCIE 학술지에 주저자로 또는 SCI 학술지에 공동저자로 1편 출간.
  - b) 국내학회에서 주저자로 또는 국제학회에서 공동참여자로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 1회 이상.
  - c) 이 개정안은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2017학년도 2학기 학위 수여자부터 적용한다.
3. 학위 청구자격 심사: 석사학위/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은 청구논문 심사신청 전에 위 1.1절/1.2절의 학위 청구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박사학위/석사학위 청구자격 승인 요청서>(별첨)을 학과행정실에 제출하여 학위 청구자격 적정성 여부에 관한 대학원 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학위기간의 제한.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은 박사과정 5년(석박사통합과정 7년)을 원칙으로 한다. 박사과정 6년(석박사통합과정 8년) 제부터 학과장의 결정에 따라 학과의 조교배정, 장학혜택, 재정지원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sup>1</sup>주저자는 제1또는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sup>2</sup>출간은 게재예정을 포함한다.